

2019년 경기도 MICE 유치·개최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MICE 행사의 경기도 유치·개최를 지원합니다.

2019. 3. 1

경기관광공사 사장

1. 지원단계 정의

단계	유치지원	해외홍보 지원	개최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로 유치를 추진중인 신규 MICE 행사	경기도로 유치 확정된 MICE 행사의 외국인 참가자 증대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당해년도 MICE 행사

- ※ 회의/이벤트 등 국내행사는 '개최지원'만 해당. 인센티브단은 '유치·개최지원'만 해당됨
- ※ 1개의 MICE 행사에 유치/해외홍보/개최 단계별로 각 1회씩 총 3회까지 지원가능

2. 지원대상 MICE 행사

구분	외국인 포함 행사	내국인 행사
회의	① 외국인 30명 이상, 전체 150명 이상 ② 외국인 50명 이상, 전체 100명 이상 * 공통 : 2일이상 개최 시	① 내국인 100명 이상, 2일 이상 ※ 종교단체 회의행사는 제외(수련회 등)
전시회	① 국제전시회 또는 해외기관과 공동주최·주관하는 전시회 - 전시면적 2,000m ² 이상, 참가업체 50개 이상, 해외바이어 2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전시회	-
이벤트	① 참가국수 2개국 이상, 외국인 50명 이상, 2일 이상 ※ 지자체 축제 등은 지원대상 제외	① 내국인 300명 이상, 1일 이상 ※ 종교단체 회의행사는 제외(수련회 등)
기업회의	① 전체 50명(외국인 20명 포함) 이상, 2일 이상 개최 ※ 도내 MICE 시설에서 회의 필수 ※ 팀빌딩 활동, 수련회, 갈라 디너(공연 등)은 회의 시간에서 제외	-
인센티브단	① 외국인 50명 이상, 도내 1박이상 또는 유료관광지 3개소 이상	
특별지원 (융복합국제회의)	① 도내 마이스 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인증 전시회 이상) 중 국제회의를 신규 개최할 경우 지원(개최지원금 5백만원) ※ 지원대상 행사 : 전시회 및 회의의 외국인포함행사 개최 기준 이상 ※ 지원금 사용범위 : 국제회의 개최지원 비용(개최지원항목 참조)	

- **UIA, ICCA,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기준 충족 회의 및 **UFI** 기준 충족 전시회에 **가점부여**
- 경기도 소재 venue에서 **다년간 개최 확정 행사시(최소 3년) 가점부여**
- 국제회의 유치가능성이 높은 국내회의 **가점부여**
- 인센티브단은 **CSR(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및 **재래시장** 방문 시 **가점부여**
- 기타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MICE 행사유치 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행사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
- 기타 제외대상 판단은 경기마이스뷰로 내부방침에 따름(예 : 국내 종교행사 등)

3. 지원신청 주체

- ① 국내 주최·주관단체(학회, 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 여행사, 기업)
 - ② 국내 주최·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기관(PCO, PEO, MICE 시설, 여행사 등)
 - ③ 해외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주최(주관)하는 국내기관
- ※ ②, ③은 위임장 제출 필요

4. 단계별 지원항목

유치지원	해외홍보 지원	개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치제안서/PT/홍보물(인쇄, 배너, 영상물 등), 기념품 제작 ②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유치지지서한 또는 동영상 메시지 ③ 본부단체 관계자 사전방한(경기도 답사) 항공, 숙박, 차량, 관광지 입장료 - 2인 이하, 이코노미석·스탠다드룸 ※ 항공좌석은 협의 조정 가능 ④ 유치단의 유치결정 회의 or 이에 준하는 회의 참가경비 - 2인 이하 - 이코노미석·스탠다드룸 - 등록비(공식행사포함) ⑤ Korea 경기 Night 연회비, 홍보부스 설치 운영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사관련 홍보물(인쇄, 배너, 영상물 등), 기념품 제작 ② 해외공식 연회비 및 공연 - ex) 경기도 주최 연회 등 ③ 홍보부스 설치·운영비 ※ 직전차대회까지 1회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홍보물, 기념품 제작 ② 경기소재 컨벤션 시설 및 준회의시설 임대료 ③ 공식 연회비 및 공연 - ex) 환영리셉션, 갈라 디너 등 ④ 경기도내 관광시설 입장료 및 차량비, 가이드 ⑤ 도내 MICE 시설 및 관광지내 팀빌딩 프로그램 ⑥ 전통시장, 쇼핑시설 할인쿠폰·상품권 등 ⑦ 해외 초청자 숙박비(포상관광 제외) ⑧ 참가자 대상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운영
<p><주 의 사 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지원금 중 70% 이상 개최지역(시·군) 업체 활용할 것 (뷰로 및 사군에서 지원항목 추천가능) ◦ 행사장(MICE 시설) 임차료는 총 지원금의 70%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 숙박비는 초청연사 숙박비를 의미하며, 포상관광(인센티브단)은 숙박비 지원 제외 ◦ 위 항목 外 항목도 행사의 경제효과 등을 감안, 지원 검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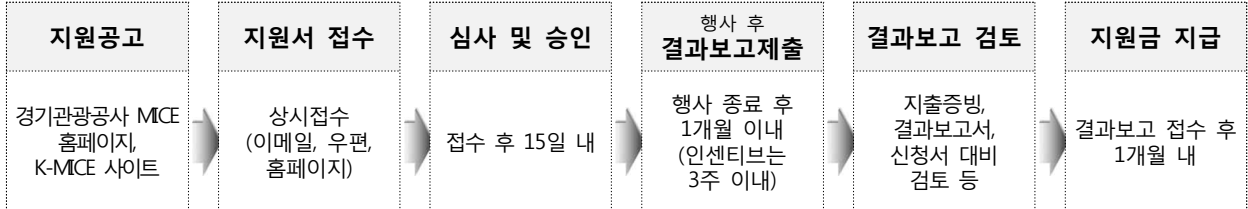
5. 지원방식

구분	회의/전시회/이벤트	기업회의/포상관광(인센티브단)
지원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지원 방식 - 지원금액 내에서 주관단체가 先집행, 결과보고 접수·검토 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지원 방식 - 지원금액 내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집행, 주관단체는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 ※ 결과보고의 불성실 제출 시 환수조치

6. 지원조건

- ① 홍보물, 기념품 등에 경기관광공사 후원명기 또는 로고 삽입
- ②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등 협조
- ③ 경기도 MICE·관광 홍보부스 운영 협조
- ④ 개최지원금 **70% 이상 개최지역(시군) 업체 활용**(행사장 임차료는 70% 이내)

7. 지원절차



8. 지원금 신청

- ① 신청기간 : 2019. 3 ~ 예산 소진시 까지
 - 정기접수 : **(1차) 2019. 3.1~20, (2차) 2019. 7.1~20**
 - 수시접수 : 유치/홍보/개최 최소 1개월 전
- ② 결과통보 : 내부심사 후 공문을 통한 확정결과 통보
- ③ 문 의 처
 - 국제·국내·기업회의/전시/이벤트 : **해외마이스사업팀 마이스파트(이선형 파트장, 031-259-4785)**
 - 인센티브 : **해외마이스사업팀 해외마케팅파트(이자영 파트장, 031-259-4791)**
- ④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제출

이 메 일	gmice@gto.or.kr
우 편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5층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이스사업팀

9. 제출서류

지원 신청 시	결과보고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최단체 명의 공문 1부(유치, 홍보, 개최지원 공통) ② 유치/홍보/개최지원 신청서 1부(제공 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대행기관 대행증빙서류(위임장 또는 계약서, 주관사 공문 등) ⑤ 특별지원의 추가서류 별도 협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최단체 명의 공문 1부(유치, 홍보, 개최지원 공통) ② 유치/홍보/개최 결과보고서 1부(제공 양식) ③ 후원명기 및 로고삽입 증빙 원본 1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참가자 리스트 작성 시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국적, 소속, 이메일의 4가지 항목 필수 ※ 4항목 완전 기입자가 전체 참가자수 80% 이상 충족해야함(국내행사는 국적 제외) - 해외 참가자 경우, 국내 소속 참가자 인정 불가 - 중복명단, 이메일 무효처리 </div>

10. 지원불가 및 취소

- 타 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인센티브단 기념품 제외)
- 경기관광공사의 행·재정적 지원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3배의 위약금 청구 및 **3년간 지원신청 제한**
- 1 행사 1 분야 지원 신청 원칙(예 : 회의동반 전시회 '회의', '전시회' 동시 신청 불가)
-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증빙, 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
- 행사결과가 당초 계획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최종 참가자가 당초 신청 시 보다 감소한 경우 지원금 감액 또는 취소**

구 분	지원금 감액 및 취소 기준		비고
	감액(감소율 비례 감액)	취소(전액 취소)	
국제회의 기업회의 국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참가자 20% 이상 감소 시 ◦ 외국인 참가자 15% 이상 감소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참가자 30% 이상 감소 시 ◦ 외국인 참가자 30% 이상 감소 시 	최저감소율 적용원칙
전 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참가업체 20% 이상 감소 시 ◦ 해외 참가업체 15% 이상 감소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참가업체 30% 이상 감소 시 ◦ 해외 참가업체 30% 이상 감소 시 	
이 벤 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참가자 20% 이상 감소 시 ◦ 외국인 참가자 20% 이상 감소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참가자 30% 이상 감소 시 ◦ 외국인 참가자 30% 이상 감소 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15% 이상 감소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30% 이상 감소 시 	

※ 지원금 감액 시, '최저감소율'만큼 감액